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
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현숙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성폭력방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63호, 2023. 4. 18. 공포, 2024. 4. 19. 시행)됨에 따라, 해당 법 개정내용의 시행을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성폭력 사건 발생시 통보기한 규정(안 제2조의4 신설)

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로 통보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하여,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0. 00. ~ 1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4부터 제2조의6까지를 각각 제2조의5부터 제2조의7까지로 하고,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4(성폭력 사건 발생시 통보)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조의6(중전의 제2조의5)제1항 중 “제2조의4”를 “제2조의5”로 한다.

별표 5 제2호가목 위반사항란 가목 중 “법 제22조”를 “법 제2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 제2조의4 (생략) 제2조의5(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) ① 제2조의4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 제2조의6 (생략)	제2조의4(성폭력 사건 발생시 통보)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제2조의5 (현행 제2조의4와 같음) 제2조의6(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) ① 제2조의5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2조의7 (현행 제2조의6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92